

## 경찰인력과 장비의 증가와 범죄예방효과간 상관관계 분석과 그 정책적 시사점

노호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안방폐장사태와 부산APEC기간동안의 경찰력강화(인력, 장비)와 범죄예방효과를 사전사후분석과 다른 경찰서와의 비교분석을 하고,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각종통계를 자료로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며,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경찰활동의 범죄억제효과는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경찰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어 왔고, 장비도 더 좋아졌지만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사회에는 일정한 정도의 범죄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경찰력이 증강됨에 따라 암수범죄가 적발되어 범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경찰력의 강화하는 것도 국가예산을 경찰에 집중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경찰인력과 순찰차를 1.5배로 증가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순히 어떤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와 지역에 집중하여 투입할 때 그 예방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역경찰관은 지역주민의 방법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활안전관리사(상황적 범죄예방기법 지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② 경찰의 순찰은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순찰을 시행해야 하며, ③ 검거율을 제고해야 하고, ④ 문제지향과 정보지향 경찰활동을 통합하여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경찰력의 강화, 범죄예방효과, 지역경찰, 순찰활동, 지역경찰활동의 개선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의 검토
- III. 경찰력의 강화와 범죄예방간의 상관관계분석
- IV. 정책적 시사점 및 경찰의 전략
- V. 결 론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험과 토론을 하고, 경찰자원의 용도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은 형사사법분야의 전문가의 책무인데, 한국경찰이 창설된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의 강화가 당연히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가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려 하지 않았다.

1930년에 경찰학자인 Bruce Smith는 순찰의 효과성 여부를 통제된 실험(controlled experiments)을 통하여 입증할 것을 제안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실험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오랜 기간 동안 실시된 것은 바로 1972년의 Kansas City 경찰국(미국, 미주리주)이다.

경찰의 순찰부서는 경찰기관에서 가장 큰 부서이고, 경찰과 시민이 접촉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모든 다른 경찰기능은 순찰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배치해야 한다.

한국경찰은 그 동안 경찰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이고 상부기관의 지시나 규칙에 의존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순찰활동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05년 12월 현재 전체 경찰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39,061명(정원기준)이 순찰지 구대에 근무한다. 막대한 자원을 순찰지구대에 투입하여 주로 24시간 규칙적 순찰활동 및 신고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그 효과성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미국의 경우 1972년 Kansas City 경찰국에서 범죄예방 순찰실험을 실시하여 차량순찰이 범죄예방효과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험은 기존의 경찰전략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경찰력의 변화는 범죄예방과 국민의 안전욕구 층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을 통하여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오늘날의 범죄상황과 추세에 맞는 경찰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획과 그 기획에 따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수립은 경찰이 부담해야 하는 치안수요와 이에 따른 인력배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된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고 특정 전략의 선택은 여러 가지 분석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찰인력과 장비의 증가와 범죄예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한 실험대상의 무작위화, 실험변수의 조작, 노출시기 및 결과변수의 측정시기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최근 다른 경찰서와 비교하여 경찰력이 특별하게 강화된 경찰서(경찰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배치된 경우)를 대상으로 사전사후측정과 비슷한 인구와 면적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사후실험설계(Ex-Post Facto Research Design)이다. 사후실험설계란 결과가 이미 발생했거나, 독립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어떤 결과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사후적으로 추적하여 찾아내는 방법이다. 최근에 경찰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배치된 경찰서는 방폐장사건에서의 부안경찰서, APEC 기간동안의 해운대 경찰서이다.

부안경찰서는 2003년 5월 이후 이른바 부안사태(방사능폐기장 유치반대시위)가 발생하여 기존의 경찰력에 수십배를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 경찰인력이 8,000명까지 되었던

곳이다. 부안경찰서와 비교하는 경찰서는 관할인구와 면적 및 지역의 특성(해안가)이 비슷한 서천경찰서와 창녕경찰서이다. 부안경찰서와 비교되는 경찰서의 비교기간은 부안경찰서에 경찰력이 대규모로 배치된 이후인 2003년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의 기간으로 하고, 6개월 동안 발생한 통계비교는 112건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사범, 경범죄위반이다. 부안경찰서의 경우 전년도 동기간 즉 2002년도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의 범죄통계를 부안사태가 발생하여 경찰력이 대규모로 배치된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와 상호 비교하여 사전사후분석을 시행한다.

해운대경찰서 관할지역에서 2005년 11월 14일 – 21일까지 APEC정상회의(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가 개최되고, 그에 앞서서 2005년 10월 10일 – 14일 까지 ILO 아태총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특히 APEC정상회의는 단군이래 최대의 행사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운대경찰서 관할지역은 2005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국의 경찰이 동원되어 경계와 경비태세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지역보다 수십배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운대경찰서와 비교하는 경찰서는 관할인구와 면적 및 지역의 특성이 비슷한 분당경찰서, 수성경찰서이다. 해운대경찰서와 비교되는 경찰서의 비교기간은 해운대경찰서에 경찰력이 대규모로 배치된 이후인 2005년 10월부터 11월 까지 2개월의 기간으로 하고, 2개월 동안 발생한 통계비교는 112건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사범, 경범죄위반이다. 해운대경찰서의 경우 전년도 동기간 즉 2004년도 10월부터 11월 까지 2개월의 범죄통계는 경찰력이 대규모로 배치된 2005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와 상호 비교하여 사전사후분석을 시행한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순찰차량의 증가 및 경찰인력의 증가와 범죄예방간의 상관관계를 병행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암수범죄를 고려하지 않고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의 검토

### 1. 이론적 배경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즉 개인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범죄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므로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게 하고, 이러한 처벌을 통하여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처벌의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신속성(swiftness), 확실성(certainty), 엄격성(severity)이 요구된다. 즉 국가기관은 범죄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범죄자를 모두 처벌하며, 죄질에 상당하는 엄격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이기현 · 기광도, 1994: 31).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제지이론은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요소 중에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은 처벌의 신속성 및 확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처벌의 신속성은 경찰의 순찰활동과 연결되고,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자의 체포활동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경찰력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한 체포능력을 높이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범죄자 및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억제이론은 몇 가지 한계<sup>1)</sup>를 가지고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은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조건 및 범죄기회를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론은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생태학적 범죄학(ecological criminology),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등에 기초하고 있다(Clarke, 1983: 225 – 256). 이 이론의 범죄예방논리는 범죄행위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높이고,

1) 첫째로 억제이론은 합리적 선택론에 근거하고 있어서, 절도 등의 재산범죄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만, 충동적 범죄유형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억제이론은 폭력범죄와 같은 충동적 범죄가 개인의 합리적 결정보다는 상황적 요인과 성향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로, 억제이론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범죄자 및 일반인이 확실하게 인지할 것을 전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셋째로, 억제이론에서는 처벌을 통한 예방효과가 실패하였을 경우, 이를 보완할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넷째로, 억제이론의 가장 큰 단점은 추론적 논의이기 때문에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억제효과가 있는지, 있었다면 얼마만큼의 억제효과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서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상황적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는 목표물제거(target hardening), 출입자 인원확인(entry/exit screenings), 목표물제거(target removal), 재산등록(identifying property), 접근통제(access control), 경찰순찰(formal surveillance), 경비원고용(surveillance by employees), 범죄유발요인의 제거(removing inducements), 범죄촉진요인의 통제(controlling facilitators), 시민감시(natural surveillance) 등을 제시하고 있다(Clarke, 1992: 10 – 21).

범죄대치현상(phenomenon of crime displacement)은 특정지역의 방범체제가 확고하여 범죄가 용이하지 않을 때 범죄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Gober, 1981: 390 – 404). 즉 범죄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목표물이나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를 찾기 때문에 방범체제가 견고한 지역은 예방된다고 해도 사회전체적인 범죄는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치현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범죄꾼들의 경우 어떠한 어려움과 궁지에 직면해도 범죄는 저지르고야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대치효과는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Cornish and Clarke, 1990: 933 – 947). 즉 범행이 쉬워지면 더 많은 범죄를 범하고, 어렵고 밭각 및 체포의 위험성이 커지면 더 적은 범죄를 시도하므로 전체적으로 범죄는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범죄대치현상의 정반대의 논리는 이익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효과이다. 이는 한 곳의 방범체제가 견고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상황적 범죄예방조치가 있으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범죄예방의 효과가 확산되어 방범체제가 약한 인근지역에서도 범죄가 감소된다는 것이다(Clarke, 1995: 89 – 92).

마요내즈이론(mayonnaise theory)은 뉴욕(New York)과 잉글랜드(England)에서의 순찰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완성되었다. 잉글랜드 연구에서는 일상적 순찰이 전혀 실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찰의 순찰이 시행될 경우 범죄율과 시민만족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순찰을 시행해 왔던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할 경우 범죄율과 시민태도의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순찰력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순찰의 마요내즈이론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었다. 순찰력의 수준이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마요내즈의 수준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사실 사람들은 샌드위치에 마요네즈를 많이 바르는 것을 좋아 할 수 있지만 마요네즈를 조금씩 바르면 면 길(long way)을 갈 수 있으므로 오래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순찰의 강도를 약하게 실행하면 넓은 면적을 관할범위로 할 수 있으나 시민들은 순찰활동을 자주 목격할 수 없다. 즉 경찰관들을 명백히 면 길(long way)을

갈 수 있다. 따라서 순찰이 전혀 없었던 지역에 순찰을 시행하면 범죄감소에 효과가 있으나 이미 순찰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약간의 순찰력의 강화만으로는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한다(Langworthy and Travis III, 1994: 244).

## 2. 선행연구의 검토

엘리히와 마크(Ehrlich and Mark)는 경찰력과 범죄와의 관계를 상호결정적(simultaneously determined)이라고 규정하였다(Ehrlich and Mark, 1977: 293 – 316). 즉 경찰력과 범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잠재적 범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보상과 처벌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력의 강화는 범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보다는 합법적 행위를 선호하게 한다. 이러한 범죄자의 의사결정은 결국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또한 잠재적 피해자는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극소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며, 경찰도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극소화하여 사회적 최적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범죄가 증가하면 합리적인 잠재적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증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는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경찰력 및 지원을 강화 시킨다. 이와 같이 경찰력의 증가는 범죄를 감소시키는 부(–)의 관계를 가지며, 반대로 범죄율의 증가는 경찰력의 증가시키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윌슨과 볼랜드(Wilson and Boland)는 경찰활동이 강도범죄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두 가지 측면은 경찰활동이 강도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체포의 가능성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찰활동의 범죄억제효과를 연구하였다(Wilson and Boland, 1978: 367 – 392). 그들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찰의 지원과 활동이 강화될수록 강도범죄의 체포가능성은 높아진다. 둘째로, 체포가능성과 강도범죄의 발생은 부의 관계를 가진다. 즉 경찰의 검거율이 높을수록 범죄발생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윌슨과 볼랜드는 1974년도 미국의 34개 대도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위의 가설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강도 발생율은 강도범죄의 검거율과 강한 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과 검거율은 경찰의 지원 및 적극적 활동에 비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윌슨과 볼랜드는 경찰의 지원과 활동은 다른 사회경제적인 요소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강도범죄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경찰력을 강화시키고, 범죄억제를 위하여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범죄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제이콥과 리치(Jacob and Rich)는 미국의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1948년부터 1978년 까지의 시계열적 자료를 사용하여 경찰의 자원과 활동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는데, 앞의 윌슨과 볼랜드의 연구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Jacob and Rich, 1981: 109 – 122). 그들은 경찰의 인력과 예산, 검거율, 강도범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경찰력과 범죄율의 관계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10개의 도시 가운데서 3개 도시에서만 강도 범죄의 검거율과 발생율의 관계가 반비례적으로 나타났고, 6개의 도시에서는 비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경찰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제이콥과 리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찰활동의 증가는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강도범죄에 대한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인지를 증가시켰다. 즉 경찰활동이 범죄를 더 많이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인지율을 높여서 통계상 범죄율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제이콥과 리치의 연구대상이 10개 도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윌슨과 볼랜드의 주장, 즉 경찰력의 강화와 범죄율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비판하고 있다.

로프틴과 맥도윌(Loftin and McDowell)은 1926년부터 1977년까지의 미시간(Michigan)주, 디트로이트(Detroit)의 경찰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력과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찰력과 범죄율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는 못했다(Loftin and McDowell, 1982: 393 – 401).

샘슨과 코헨(Sampson and Cohen)은 윌슨과 볼랜드의 가설을 재구성하여 경찰활동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재구성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경찰활동은 범죄자에 대한 검거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감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경찰의 활동은 범죄행위에 대한 위협효과를 높여서 범죄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경찰의 적극적 활동은 직접적으로 체포의 가능성을 높이고, 간접적으로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처벌의 두려움을 증가시킴으로서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견해이다(Sampson and Cohen, 1988: 164 – 189). 이들은 위의 가설을 10만명 이상인 171개 도시의 1980년도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적극적 활동은 다른 사회적 조건들이 통제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강도범죄의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샘슨과 코헨은 경찰활동의 범죄억제효과를 인정하고, 경찰은 검문검색 등의 적극적인 전략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할 것을 지지하였다.

캔자스시 예방순찰실험(Kansas City Preventive Patrol Experiment, 1972 – 1973)은 미국경찰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식된다. 실험지역은 남부순찰구역(south patrol

division)의 24개 순찰대 가운데 15개 순찰구역이 선정되었으며, 범죄자료, 서비스요구, 인종적 구성, 소득수준, 인구이동의 정도에 따라 사후적 순찰구역(reactive beats), 사전적 순찰구역(proactive patrol), 통제적 순찰구역(control patrol)으로 분류되었다. 사후적 순찰구역(reactive beats)에서 경찰차는 예방순찰을 수행하지 않고, 시민의 요청에만 대응한다. 또한 순찰의 효과에 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범죄활동, 지역사회의 인식과 태도, 경찰의 활동측면으로 수집되었다. 범죄발생에 대한 자료는 피해조사와 공식적인 범죄통계자료로 파악하였으며, 범죄피해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가정과 기업의 범죄예방조치, 경찰에 대한 태도 등도 측정하였다. 또한 경찰의 현장임장시간, 체포활동, 경찰관의 시간활용, 경찰관의 태도 등도 조사하였다. 즉 이전의 실험이 공식적인 경찰자료에만 의존한 것과는 다르게 다양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몇 달동안 진행한 후에 보도된 범죄사건수, 체포건수,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시간 등의 통계들이 수집되고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찰을 강화한 지역과 순찰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의 범죄발생 건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고, 세집단을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사자들은 크게 놀랐다. 다시 말하면 기대에 반하여 예방적 순찰이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Stone and Deluca, 1985: 365 – 366).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찰인력과 장비를 강화하고,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각종의 사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듀르크(E. Durkheim)이 주장했듯이 현실의 갈등적이고 공격적인 사회에서 범죄행위는 하나의 정상적·자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이익과 자기주장, 그리고 폭력의 행사가 어느 정도 용납되고 정당시되기도 하며, 때로는 찬양되기도 하는 사회에서는 일정수준의 범죄문제가 발생함이 정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어느 정도 까지의 범죄행위는 사회의 진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건전한 사회의 한 구성부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Durkheim, 1897; 신진규, 1993: 273). 이 주장과 같이 어느 사회건 어느 정도의 범죄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예방할 수 없다면 경찰의 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가가 문제된다. 일정한 정도의 고의범은 예방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에 범죄를 포기하는 기회범들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방범의식과 상황적 범죄예방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

### III. 경찰력의 강화와 범죄예방간의 상관관계분석

#### 1. 경찰인력의 증강배치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분석

##### (1) 부안경찰서의 사전사후분석과 경찰서간 비교

###### 1) 사전사후 비교분석

부안경찰서는 2006년 7월 현재 관할면적이 493.28km<sup>2</sup>이고, 관할인구는 64,915명이며, 경찰인력 193명에 1개 지구대 9개 파출소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사태가 발생한 2003년 5월에서 12월까지의 경찰력 증원 배치현황은 연인원 6,318중대 694,980명이였고, 경찰차량은 669대(순찰차 544, 조명차 71, 살수차 22, 헬기 32)가 그 기간 동안 증원 배치되었다. 동원인력이 최대 8,000명에 이른 때도 있었다고 한다. 부안경찰서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순찰을 담당하는 지역경찰인력이 100명이라고 본다면 8,000명은 80배에 이르는 경찰력의 강화에 해당한다.

이른바 부안사태가 발생하여 경찰력이 대폭 증가된 2003년 7월 – 12월의 기간과 2002년 7월 – 12월의 기간이 전년도 동기간을 비교하면 2003년도에 112신고는 681건에서 903건으로 222건이 증가하여 33% 증가하였고, 살인과 강도는 각각 0건으로 변화가 없다. 강간은 2002년에는 4건이 발생하였고, 2003년에는 1건이 발생하여 75%감소하였다. 방화는 2002년 1건에서 2003년에 3건으로 경찰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200%증가하였다. 절도는 2002년에 68건에서 2003년에 25건으로 43건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줄어들었고 이는 63%가 줄어들어서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졌다. 폭력은 2002년 158건에서 2003년에는 112건으로 46건(29%)감소하였다. 음주단속은 2002년에 323건에서 2003년 258건으로 65건(20%)감소하였다. 무면허단속건수는 2002년 74건에서 2003년 59건으로 15건(20%)줄어들었다. 교통사고는 2002년 364건에서 2003년 314건으로 50건(14%)이 감소하였다. 교통단속은 2002년에 6,000건에서 2003년에 2,017건으로 3,983건(66%)이 줄어들었다. 2003년 이후 부안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전화면접한 바에 의하면 이 때에 교통단속공무원도 집회시위관련업무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교통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속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표 1〉 사전·사후 범죄발생 비교(6개월)

기간	112신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음주단속	무면허	교통사고	교통단속	경범죄
'02. 7-12	681	0	0	4	1	68	158	323	74	364	6,000	260
'03. 7-12	903	0	0	1	3	25	112	258	59	314	2,017	68
증감%	↑ 222 33%	0	0	↓ 3 75%	↑ 2 200%	↓ 43 63%	↓ 46 29%	↓ 65 20%	↓ 15 20%	↓ 50 14%	↓ 3,983 66%	↓ 192 74%

경찰력이 대폭강화된 이후 112신고는 33%증가하였고, 방화는 1건에서 3건으로 200%증가하였다. 이 방화는 건수가 몇건 않되어 명백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경찰력의 강화(순찰, 경비인력의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살인과 강도는 두 기간에 건수가 0건이라서 경찰력의 강화와 그 효과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강간 75%감소, 절도 63%감소, 폭력 29%감소, 음주단속 20%감소, 무면허단속 20%감소, 교통사고 14%감소, 교통단속 66%감소, 경범죄 74%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건수가 감소하였고, 특히 경찰력이 강화된 이후 60%이상 감소된 것은 강간(75%), 절도(63%), 교통단속(66%), 경범죄(74%)이므로 이를 범죄가 경찰력의 강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범죄유형임을 알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순서로는 강간, 경범죄, 교통단속, 절도이다.

## 2) 다른 경찰서와 비교

부안경찰서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충남 서천경찰서는 2006년 7월 현재 관할면적 364km<sup>2</sup>이고, 관할인구는 63,873명에 경찰인력 183명(경찰서 83, 지구대·파출소 100명)이 근무하는 곳이다.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전체 범죄발생건수 547건이고 112신고건수는 225건이 발생하였다.

〈표 2〉 서천경찰서의 범죄현황(2003. 7 – 2003. 12)

112건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단속	교통사범	경범죄
225	2	0	1	1	75	176	3,960	246	46

부안경찰서와 비교되는 창녕경찰서의 조직과 범죄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7월 현재 면적은 533km<sup>2</sup>이고, 관할인구는 64,500명, 경찰인력 162명, 3개 지구대 3개 파출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창녕경찰서의 일반현황**

행정구역	면적 (km <sup>2</sup> )	인구 (명)	경찰인력 (명)	지구대 개소/인원	파출소 개소/인원	치안센터 개소/인원	분소 개소/인원
14개 읍면 (읍2 · 면12)	533	64,500	162 (경찰서 72 지구대 90)	3 / 54	3 / 28	4 / 4	4 / 4

2003. 7. 1부터 12. 31까지 6개월 동안의 범죄발생건수는 908건이고 112건수는 1,05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살인이 1건, 강도 1건, 강간 2건, 방화 3건, 절도 106건, 폭력 191건 등이 발생하였다.

**〈표 4〉 창녕경찰서의 112신고건수와 범죄현황**

112 신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 단속	음주	무면 허	교통 사고	경범 죄
1,055	1	1	2	3	106	191	3,500	146	98	286	74

각 경찰서의 면적, 인구, 경력과 2003년7월부터 12월까지 3개경찰서(부안, 서천, 창녕)의 범죄통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각 경찰서의 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구는 3개 경찰서 모두 64,000 – 65,000명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경찰인력은 부안의 경우 전체 193명의 경찰인력과 동원된 인력이 가장 많은 경우 최대 8,000명 정도가 상주했던 곳이고, 서천과 창녕은 평상시의 근무인력으로 각각 183명, 162명이고, 지역경찰은 각각 100명, 90명이었다. 살인은 서천 2건, 창녕 1건과 비교하여 부안은 0건이었고, 강도는 부안 0건, 서천 0건, 창녕 1건이었다. 강간은 부안 1건, 서천 1건, 창녕 2건이고, 방화는 부안 3건, 서천 1건, 창녕 3건이었다. 절도는 부안 25건, 서천 75건, 창녕 106건이고, 폭력은 부안 112건, 서천 176건, 창녕 191건이었다. 교통사범은 부안 631건, 서천 246건, 창녕 530건이었고, 교통단속은 부안 2,017건, 서천 3,960건, 창녕 3,500건이었다. 경범죄는 부안 68건, 서천 46건, 창녕 74건이었다.

강력사건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는 건수가 불과 5건 미만이어서 그 예방 효과를 단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경찰력의 강화와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절도와 폭력은 상당수 감소한 측면이 있다. 절도의 경우 부안이 서천의 1/3(33%)이고, 창녕의 1/4(25%)로 경찰력의 강화가 큰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난다. 폭력도 부안이 서천보다 64건이 적게 발생하였고 창녕보다는 79건이 적게 발생하였다. 폭력사건의 경우도 경찰력이 강화되었을 경우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범죄 유형으로 판단된다. 교통단속건수의 경우 서천(3,960건)과 창녕(3,500건)이 비슷하지만 부안은 2,017건으로 다른 경찰서보다 상당히 적은 단속건수이다. 부안경찰서의 경우 방폐장문제와 관련하여 교통단속을 하는 교통경찰관을 동원하여 집회시위관련 업무에 투입하여 적은 수치로 나타난 측면도 있고, 일반시민들이 도로 곳곳에 경찰관들이 자주 나타나므로 이러한 경비경찰인력이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은 아니지만 단속경찰관으로 오인하여 위반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3개 경찰서의 비교**

경찰서	면적 (km <sup>2</sup> )	인구 (명)	경력 (명)	112 신고	살 인	강 도	강 간	방 화	절 도	폭 력	교 통 사 법	교 통 단 속	경 범 죄
부 안	493	64,915	최대 8,000	903	0	0	1	3	25	112	631	2,017	68
서 천	364	63,873	183 (100)	225	2	0	1	1	75	176	246	3,960	46
창 넝	533	64,500	162 (90)	1,055	1	1	2	3	106	191	530	3,500	74

참고: 면적, 인구, 경력은 2006년 7월 현재의 상황이고, 경력 중 ( )은 지역경찰인원을 의미함.

## (2) 해운대경찰서의 사전사후분석과 경찰서간 비교

해운대경찰서의 일반현황은 2006년 7월 현재 관할면적이 178.4 km<sup>2</sup>이고, 관할인구는 487,103명, 경찰인력 695명이다. 해운대구의 관할지역은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지역이다. 해운대구의 인구는 40만이 넘고, 기장군 관할지역은 8만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관할면적은 해운대구가 51.91km<sup>2</sup>이고 기장군 지역은 125.73km<sup>2</sup>으로 면적은 기장군이 넓지만 인구는 해운대구 지역이 매우 많다. 따라서 해운대구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이고, 기장군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시골지역이다. 해운대 경찰서의 조직현황은 지구대 7개, 파출소 3개, 치안센타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경찰 인력은 총 377명이다.

〈표 6〉 지구대 및 파출소 현황

구 분	지 구 대							파 출 소		
	지구대	재송	반여	우동	중동	좌동	반송	기장	송정	일광
치 안 센 터	1	2	2	2	1	1				
	재송2	반여2 반여3	우 1 역전	중 1 중 2	좌 2	반송2				
근무인원	35	50	58	50	48	48	37	17	17	17

APEC 기간중 다른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증원배치 상황은 아래와 같다. 경찰관은 3,078명이 증원 배치되었고, 경찰부대는 182중대가 동원되었다. 182개 중대의 총인원은 1개중대에 100명씩이라고 본다면 18,200명이 동원된 셈이 된다. 경찰차량은 546대가 동원되어 증원 배치되었다. 대체로 동원된 경찰인력은 정규경찰관 3,078명, 전의 경 18,200명으로 총 2만 1천명 수준이다. 이는 평상시 해운대 경찰서의 지역경찰인원 377명의 55배 이상이 된다.

〈표 7〉 2005년 APEC기간 중 경찰력 증원배치 일별 상황(타 지방청 지원현황)

일 자	경찰관(명)	경찰부대	경찰차량(버스)	비 고
10/26		3	9	
27		3	9	
30		4	12	
31		4	12	
11/9		6	18	
10		18	54	
11		12	36	
12	206	4	12	최종고위관리회의
13	206	4	12	"
14	341	2	6	
15	330	31	93	합동각료회의
16		58	174	"
17	834	33	99	
18	1,161			1차 정상회의
누계	3,078명	182중대	546대	

### 1) 사전·사후 비교분석

#### ① 해운대권(도심지역)

범죄발생건수는 경찰력이 강화되기 전인 2004년 10월 – 11월 2개월의 기간에 해운대권에서는 14,65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경찰력이 대폭적으로 강화된 2005년 10월 – 11월의 기간에는 3,869건이 발생하였다. 전과 후를 비교할 경우 경찰력이 강화된 후에 10,782건의 범죄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경찰력이 강화된 후에 발생한 범죄건수는 강화되기 전의 26.4%에 불과하다. 이는 대폭적인 범죄예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인은 1건에서 0건으로 줄었고, 강도는 3건에서 2건으로, 방화는 3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강간은 4건에서 10건으로 오히려 늘었는데, 이는 격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력의 강화와는 관계없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절도는 207건에서 245건으로 오히려 늘었고, 폭력은 309건에서 273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교통과 경범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교통은 13,733건에서 3,335건으로 10,398건이 줄고, 경범은 391건에서 4건으로 387건이 줄어들었다. 교통관련 사건은 3.1배 줄고, 경범은 98배 줄었다. 따라서 경찰력이 대폭 강화될 경우 예방효과가 큰 범죄유형은 교통관련범죄(주로 교통단속)와 경범죄임을 알 수 있다.

**〈표 8〉 해운대권의 범죄발생건수(112포함)**

기간	총계	112 건수	범죄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	경범
'04년 (10월 ~11월)	20,850	6,199	14,651	1	3	4	3	207	309	13,733	391
'05년 (10월 ~11월)	11,338	7,469	3,869	0	2	10	0	245	273	3,335	4
증감	↓ 9,512	↑1,270	↓ 10,782	↓1	↓1	↑6	↓3	↑38	↓36	↓ 10,398	↓387

#### ② 기장권(외곽지역)

기장권은 인구가 8만여명에 관할면적은 126km<sup>2</sup>로 해운대 경찰서의 동쪽 외곽지역이고, 상대적으로 관할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은 지장군지역이기도 하다. 강간, 절도, 폭력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경찰력이 강화된 이후에 줄어들었다. 특히 교통관련 범죄는 강화되기 전보다 강화된 후에 1,472건에서 145건으로 1,327건이 줄어서 10.2배나 줄어

들었고, 경범도 마찬가지로 308건에서 5건으로 303건이 감소하고 61.6배 줄어들었다. 경찰력 강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범죄는 해운대권과 마찬가지로 교통관련범죄(주로 교통단속)와 경범죄 위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기장권의 범죄발생건수(112포함)**

기간	총계	112 건수	범죄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	경범
'04년 (10월 ~11월)	2,758	890	1,868	1	0	0	2	27	58	1,472	308
'05년 (10월 ~11월)	1,529	1,279	250	0	0	2	0	34	64	145	5
증감	↓ 1,229	↑389	↓ 1,618	↓1	0	↑2	↓2	↑7	↑6	↓ 1,327	↓303

## 2) 다른 경찰서와의 비교분석

다른 경찰서와의 비교는 해운대경찰서와 비슷한 관할인구를 가지고 있는 수성경찰서와 분당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비교의 구성요소는 관할면적, 관할인구, 지역경찰인원, 범죄건수(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사범), 경범죄건수이고, 2005년 10월 ~ 11월 2개월 동안의 범죄발생을 해운대경찰서와 비교한다.

수성경찰서의 일반현황은 관할면적이  $76.57\text{km}^2$ 이고, 관할인구는 434,345명, 경찰총인원은 628명이고, 지구대는 6개이며, 파출소는 없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인원은 335명이다. 경찰총인원이 628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경찰서 중의 하나이다.

**〈표 10〉 수성경찰서 일반현황**

관할면적 ( $\text{km}^2$ )	인구 (명)	경찰 총인원 (명)	지구대		파출소	
			개소	인원	개소	인원
76.57 $\text{km}^2$	434,345	628	6	335	0	0

수성경찰서는 2005년 10월 ~ 11월 2개월 동안 112건수는 5,151건이 발생하고, 살인 0건, 강도 5건, 강간 6건, 방화 2건, 절도 342건, 폭력 341건, 교통사범 12,846건, 경 범 죄 119건이 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건수는 13,661건이다. 교통사범은 무면허 77건, 음주 547건, 교통사고 672건, 교통단속 11,55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사범은 교통 단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표 11〉 112신고건수 및 범죄발생현황('05. 10 ~ 11월, 2개월)

112 신고건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 사범	경범죄 위반건수
5,151	0	5	6	2	342	341	12,846	119

※ 교통사범 : 무면허(77건), 음주(547건), 교통사고(672건), 교통단속(11,550건)

분당경찰서의 일반현황으로 관할면적과 관할인구는 각각  $69.44\text{km}^2$ , 451,519명이고, 전체경찰인력은 356명이고, 이 중 지역경찰관은 165명이다. 지구대는 3개이고, 파출소는 1개이다.

〈표 12〉 분당경찰서 일반현황

관할면적	인구	경찰인력	지구대수	파출소수
$69.44\text{km}^2$	451,519	356명 (지구대 165명)	3	1

분당경찰서의 2개월 동안의 112건수는 4,524건, 전체범죄건수는 1,872건, 경범죄는 32건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 1건, 강도 1건, 강간 6건, 방화 1건, 절도 276건, 폭력 207건, 교통 699건, 기타 68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사범에서 교통 단속현황이 CIMS에서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범이 699건으로 현저하게 적은 것 으로 나타난다. 이는 입건된 범죄의 경우 범죄원표에 기록되고 이를 토대로 CIMS에 입 력하기 때문에 교통단속현황은 통계에서 빠져 있다. 112건수와 범죄발생건수는 2005년 10월과 11월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 분당경찰서의 112신고 및 범죄발생 건수(CIMS 기본통계)

구 분	112건수	범죄발생 건수									경범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	기타	
계	4,524	1,872	1	1	6	1	276	207	699 (교통단속 3,940건)	681	32
05. 10월	2,319	983	1	1	-	-	144	98	350	389	14
05. 11월	2,205	889	-	-	6	1	132	109	349	292	18

2005년 10월 – 11월 기간에 해운대 경찰서는 보통 때 보다 수십배의 경찰력이 추가배치된 지역이고, 수성경찰서와 분당경찰서 지역은 지역경찰에 의해서 순찰활동이 진행되는 곳이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범죄유형은 교통사범과 경범죄임을 알 수 있다. 해운대경찰서의 교통사범과 경범죄는 각각 3,480건, 9건인데,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수성경찰서의 교통사범과 경범죄는 12,846건, 119건이다. 경찰력이 대폭 강화되었을 경우 가장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교통사범과 경범죄임을 알 수 있다. 경범죄는 해운대가 9건이지만 분당은 32건으로 3배이상 분당경찰서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살인은 해운대와 수성이 0건, 분당이 1건이고, 강도의 경우 해운대가 2건, 수성이 5건, 분당이 1건 발생하였는데, 수성보다는 3건이 적게 발생하였고 분당보다는 1건이 많다. 방화는 해운대 0건, 수성 2건, 분당 1건으로 해운대경찰서가 관할인구와 관할면적, 112건수 등 관련 통계가 더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방화는 0건으로 방화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절도는 해운대 279건, 수성 342건, 분당 276건으로 해운대 경찰서 지역의 인구와 관할면적이 더 많고 넓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찰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지만 경찰력이 수십배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절도범죄의 경우 경찰력의 대폭 강화에도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폭력의 경우도 해운대 337건, 수성 341건, 분당 207건으로 수성경찰서와 비교할 경우 4건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에서 사전사후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경찰력이 강화되었을 경우 가장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범죄유형은 교통사범과 경범죄이다. 경찰력의 대폭강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범죄유형이 교통사범과 경범죄이므로 이러한 교통사범과 경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APEC기간과 같이 경찰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교통사범은 범죄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이고, 교통사범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단속건수로 90%를 차지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혹은 이러한 집중투입이 다른 범죄에 대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와 비용 및 효과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14〉 경찰서별 종합 비교(2005. 10월 – 11월 2개월 동안의 통계)

경찰서	112건수	관할 면적 (km <sup>2</sup> )	관할 인구	지역 경찰 인력	범죄 총계	범죄발생 건수							경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교통	
해운대	8,748	178.4	487,103	326	4,119	0	2	12	0	279	337	3,480	9
수성	5,151	76.57	434,345	335	13,661	0	5	6	2	342	341	12,846	119
북당	4,524	69.44	451,519	165	1,213	1	1	6	1	276	207	4,639	32

참 고: 분당경찰서는 교통단속요원이 3명이어서 단속건수가 적었다고 면접한 담당공무원은 답변하였고, 교통사범 699건(무면허, 음주, 교통사고)과 단속건수를 합하여 4,639건이 된다. 관할면적, 관할인구, 지역경찰인력은 2006년 7월말 현재의 현황이다.

## 2. 순찰차와 경찰공무원 정원의 증가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분석

우리나라에 순찰차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1987년 서울시경에 112시민신고 즉응체제(C3)가 처음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112순찰차가 없었을 때에는 싸이카를 활용하여 범죄에 대응하였다.<sup>2)</sup>

1987년에 기존 교통순찰차 98대를 112순찰차로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1988년에 올림픽 경비순찰용으로 50대 및 기타 방범순찰용으로 68대를 신규구입하여 배치하게 됨에 따라 1988년에는 112순찰차 보유대수가 216대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후 1989년부터는 “112巡察車 年次的 增員計劃”에 의해 매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즉 '89 – 90년까지의 2년간에 걸쳐 서울 및 5대도시와 수도권지역에 대해 1개 파출소당 순찰차 1대, 2개 지서당 1대씩 배정하기 위해 '89년 214대, '90년 919대 등의 순찰차를 증차하였고, 3단계로 '91 – '92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전국의 읍면위이상 파출소까

2) 순찰차가 등장하기 전에는 방범싸이카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80년에 전국적으로 방범싸이카는 4,065대, '82년에 4,890대로 증가하였으나 이 방범싸이카는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등 일기상태가 좋지 않으면 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재와 같은 112순찰차에 의한 예방순찰활동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차량순찰에 의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긴급대응능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12순찰차가 현장활동에 대거 투입되면서 순찰차에 의한 범죄예방개념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지 112순찰차를 배정하기 위한 중차계획을 추진한 결과, '92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읍단 위이상 파출소에 총 1,926대의 112순찰차를 배치운용하게 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경찰청, 한국경찰사, 1994: 218).

112순찰차가 0대인 1986년과 1,347대인 1991년을 비교할 경우 인구는 200만 정도 증가하였고, 범죄는 818,718건에서 1,185,648건으로 366,930건이 증가하였다. 차량은 1,347대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41% 증가했다. 아래의 년도별로 순찰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전체범죄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증가에 의한 범죄의 증가, 새로운 규제법규의 제정, 순찰차가 운행됨으로서 암수범죄를 찾아낼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순찰차의 증가에 따라 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순찰차가 증가되어 예방순찰 등 경찰의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범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전체범죄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증가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APEC 기간의 경찰력 강화에서 분석되었듯이 경범죄와 교통단속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범죄의 경우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6년 63,292건, 1989년 36,435건, 1991년 724,769건, 1995년 1,989,535건, 2004년 100,91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순찰차가 증가되어도 감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 당시의 정책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량순찰이 강화되어도 범죄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통계상 명확히 나타난다.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기존의 규칙적인 순찰활동방식이 잘못된 것일 수 있고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활용해야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인력의 증가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1970년의 경찰공무원 정원이 43,003명(인구 32,241,000명)인데 범죄는 340,390건이 발생하였다. 2004년에는 경찰공무원 정원이 93,271명(인구 48,583,805명)에 1,968,183건이 발생하였다. 경찰공무원이 2004년에 1970년에 비교하여 5만여명이 증가하였는데 범죄는 6배 증가하였다. 인구는 1,600만 정도 증가하였다. 인구 50%증가에 범죄는 600%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찰인력의 증가가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경찰인력의 증가에 따른 범죄적발견수의 증가, 법규의 증가, 암수범죄, 국민의식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명확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찰력의 증가가 공식적인 범죄건수를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112순찰차의 증가, 경찰공무원 정원의 증가가 공식적 전체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한 것이다.

**〈표 15〉 순찰차 등의 증가와 범죄건수**

연도	112 순찰차수	경찰공무원정원	경범죄통고	전체범죄	인구
1970	0	43,003	—	340,390	32,241,000
1986	0	63,471	63,292	818,718	41,213,674
1989	430	70,551	36,435	1,043,901	42,449,038
1991	1,347	84,931	724,769	1,185,648	43,295,704
1995	2,298	90,639	1,989,535	1,329,694	45,858,029
2004	3,606	93,271	100,916	1,968,183	48,583,805

참 고: 112순찰차와 경찰공무원 정원, 전체범죄, 경범죄통보는 경찰통계연보(1992, 2004),

韓國警察史(경찰청발간, 1994)를 참조하고, 인구는 통계청 연도별 인구를 참조함.

## IV. 정책적 시사점 및 경찰의 전략

### 1. 정책적 시사점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듯이 범죄학자들은 그 동안 경찰관 인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범죄발생율을 낮출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왔다. 실제로 경찰관의 증원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Tittle and Rowe, 1974: 455 – 492), 범죄율이 증가할 때 각 지역사회가 경찰력을 증원하면 범죄발생율을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발생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경찰관을 증원한 지역 사회는 상당한 정도의 범죄를 감소시킨 경우도 있다고 한다(Siegel, 2003: 122).

사실 순찰을 2배로 강화할 경우 거기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막대하다. 현재의 지역경찰인력이 4만이라면 적어도 2 – 3만의 경찰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2배의 증가도 국가예산상 불가능하다. 2배로 증가해도 Kansas City 순찰실험에 의하면 범죄에 별 영향이 없다고 분석되기도 하였다.

앞에서 경찰력이 평소의 50배이상 대거 투입하였을 경우에도 형법범과 특별범법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교통사범 중 교통단속과 경범죄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관이 거리에 대거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관들이 교통단속활동에 치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PEC 기간 중 대폭 감소하였고, 경범죄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폭 강화해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막대한 형법범, 특별법범을 예방할 수 없다면 순찰을 아무리 강화해도(순찰을 강화하는 것도 비용측면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체범죄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보기 드물게 경찰이 시민의 요구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1919년의 보스톤 경찰파업은 도시전역에 걸쳐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였고 급기야 군대까지 동원하게 되었고(Walker, 1983: 18 – 19), 이와 함께 1969년 10월의 몬트리올 경찰파업과 1967년의 시카고 블리자드사태 발생기간동안 해당도시는 치안부재상태였다고 한다(Wilson & McLaren, 1978: 323). 이러한 경우는 경찰이 시민의 요구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캔자스 순찰실험과 같이 예방적 순찰을 시행하지 않지만 시민의 요구에는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결과는 차이가 있다. 즉 시민들은 경찰파업에 의해 시민의 요구에 거의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지하여 알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며,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경찰활동의 범죄억제효과는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찰력과 범죄율간의 단순한 인과적 관계의 설정이다. 엘리히와 마크(Ehrlich and Mark)가 경찰력과 범죄와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또는 양방향적 관계로 규정한 이후, 많은 연구에서 경찰력과 범죄율은 일방적인 인과관계로 설정하여 분석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범죄의 증가는 경찰활동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활동의 증가로 범죄가 감소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범죄발생이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소홀히 하고 있다. 경찰활동은 범죄발생과정에서 범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결코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범죄발생에 대한 측정방법에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발생은 공식범죄율로 분석하고 있다. 즉 실제범죄가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인지된 범죄율을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경찰력이 향상되고 경찰의 활동이 강화되어, 경찰의 범죄인자능력이 향상된다면 공식범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할수록 공식범죄율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실제 범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공식범죄율의 증가현상은 경찰에 의한 인지범죄가 증가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식범죄율을 통한 경찰활동의 억제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된다.

셋째로, 경찰력이 범죄발생에 직접적인 억제효과를 미치는지의 문제이다. 경찰력에 의한 범죄억제효과는 사실상의 체포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인지정도에 의존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경찰력에 의한 억제효과는 경찰력의 증가 그 자체보다는 경찰력에 대한 범죄자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경찰력과 범죄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반화되기 어려우며,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 2. 경찰의 전략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경찰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 범죄통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경찰력이 증강됨에 따라 암수범죄가 적발되어 범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에는 일정한 정도의 범죄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경찰력의 강화하는 것도 국가예산을 경찰에 집중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경찰인력과 순찰차를 2배로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5배로 늘린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와 지역에 집중하여 투입할 때 그 예방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경찰이 어떠한 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경찰인력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경찰력의 강화에 의한 범죄예방효과도 한계가 있다. 이럴 경우의 경찰의 전략은 고의적인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는 사실상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상황적 범죄예방기법을 지역주민들에게 지도하는 역할로 범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존의 경찰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생활안전관리사(상황적 범죄예방기법 지도)로서의 지역경찰

지역경찰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설계하는 생활안전관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112신고 등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Call-Man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문제에 대한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거나 방범장비, 방범시설의 대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적이 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5433호, '97. 7. 10.)에 제4조의 2<sup>3)</sup>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 방범교육이 있고,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6조<sup>4)</sup>에 따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범CCTV 점검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지구대의 지역경찰관들은 순찰과 방범근무시 수시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카메라 설치위치 지도, 녹화테이프 관리보관지도를 시행해야 한다.

### (2)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순찰

사실 차량순찰은 대체로 작은 골목길을 순찰할 수 없으며, 비록 골목길을 순찰한다 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은 집안내부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범죄현장을 발견할 가능성은 낮다. 차량순찰이 범죄예방과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경찰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준일 수도 있다. 순찰이 경찰의 대응태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주 순찰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찰의 대응태세가 허술하거나 약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범죄인들이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순찰횟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므로 경찰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시간대인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종료시간대,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차량순찰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경찰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잠재적인 범죄인에게 위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요네즈이론에서 주장되었듯이 조금 보다는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위력순찰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 (3) 검거율의 제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방범체제가 견고함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검거되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장래에 어떤

3)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2: 시장 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1항 제2호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교육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주차장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69조, '96. 6. 29)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항 10호):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범죄를 행하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Nagin and Pogarsky, 2001: 865 – 892). 즉 적어도 신고된 사건의 30%이상이 체포될 수 있다면 상당한 정도의 범죄가 감소될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Title and Rowe, 1974: 455 – 492).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경찰은 각종의 과학수사기법을 통하여 검거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 문제지향과 정보지향 경찰활동의 결합

문제지향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은 범죄문제에 체포와 유죄입증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문제를 야기하는 근본문제의 파악과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범죄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데 정보지향의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과 결합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경찰의 경우 CIMS(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활용을 들 수 있다.<sup>5)</sup> CIMS를 활용하여 범죄다발지역, 범죄수법, 여죄추적 등 범죄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관할지역의 문제를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서마다 1명이상의 범죄분석전문가가 필요하다. 경찰청 차원에서 분석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찰종합학교, 수사보안연수소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사실 경찰력을 2배로 강화할 경우 거기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막대하다. 현재의 지역경찰인력이 4만이라면 적어도 2 – 3만의 경찰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2배의 증가도 국가예산상 불가능하다.

경찰력이 평소의 50배이상 대거 투입하였을 경우에도 형법범과 특별범범에는 영향

5) 앞으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CIMS는 기존에 경찰에서 사용하던 사건수사시스템, 컴스탯(범죄통계와 지도분석시스템), 수법영상정보검색시스템을 실무자의 편의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한 정보시스템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관련 시스템 통합은 CIMS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2005년에는 CIMS의 사건관리/통계 DB와 범죄자수법영상정보베이스 통합이 추진되었고, 2007년의 완성을 목표로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과 경찰, 법원, 교정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형사사법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있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교통사범 중 교통단속과 경범죄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관이 거리에 대거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관들이 교통단속활동에 치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PEC 기간 중 대폭 감소하였고, 경범죄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폭 강화해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막대한 형법 범, 특별법 범을 예방할 수 없다면 순찰을 아무리 강화해도(순찰을 강화하는 것도 비용 측면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체범죄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까지 경찰력의 강화가 범죄를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며,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경찰활동의 범죄억제효과는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경찰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어 왔고, 장비도 더 좋아졌지만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경찰력이 증강됨에 따라 암수범죄가 적발되어 범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회에는 일정한 정도의 범죄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경찰력의 강화하는 것도 국가예산을 경찰에 집중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경찰인력과 순찰차를 2배로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5배로 늘린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와 지역에 집중하여 투입할 때 그 예방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역경찰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설계하는 생활안전관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로, 경찰의 순찰은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순찰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로, 검거율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로, 문제지향과 정보지향 경찰활동을 통합하여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공식적인 범죄에 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측정했다는 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피해자조사, 자기보고식 조사가 병행되어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면 Kansas City와 같이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경찰백서』, 2004, 경찰청.
- 『警察實務全書』, 2000, 경찰청.
- 『경찰 50년사』, 1995, 경찰청.
- 『경찰통계연보』, 2006, 경찰청.
- 『경찰통계연보』, 1992, 경찰청.
- 김보환(1989). “효율적 범죄통제를 위한 방범체제의 개선: 도시경찰을 중심으로”, 『치안논총』, 제6집,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48.
- 김형청(1991).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호래(1993), 『한국도시경찰의 순찰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9), 『한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_\_\_\_\_ (2006), “순찰지구대의 인력재배치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241–281.
- 『대단위파출소 시범운영분석』, 1991, 경찰청.
- 박병식 · 주희종(1997), “파출소근무제도 및 순찰활동 개선방안”,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 『방범경찰』, 2002, 경찰종합학교.
- 『범죄예방론』, 2004, 경찰대학.
- 백형조 · 안원태(2000), 『일본의 경찰사회』, 치안연구소.
- 徐基榮譯編, 리챠—드엘 · 홀콤原著(檀紀4287年), 『美國警察巡邏』, 國立警察學校 民主警察研究會.
- 석청호(2004), 『순찰지구대 운용에 관한 연구—순찰활동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신동운(1990),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317–342.
- 신진규(1993), 「犯罪學兼刑事政策」, 法文社.
- 양문승(1996), “현대 범죄 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경찰 조직의 강화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호: 210–238.
- 이기현 · 기광도(1994), “미국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상안(1994). “경찰 방범활동체계 개선방안”, 제2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 임준태(2001), 「범죄예방론」, 좋은세상.
- 조병인(1993), 「범죄대책론」, 한림원.
- 채서일(1995),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학현사.
- 「韓國警察史」, 1994, 경찰청.

### 〈외국문화〉

- Clarke, R. V. (1992),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In M. Tonry and D. P. Farrington(eds.),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Vol. 19,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pp. 89 – 150.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rnish, D. B. and R. V. Clarke (1990), “Understanding crime displacement: An application of rational choice theory”, *Criminology*.
- Decker, S., and A. Wagner. (1982), “The impact of patrol staffing on police–citizen injuries and disposi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0(5): 375 – 82.
- Durkheim, E.,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불란서 1895, 영역 1938).
- Ehrlich, I., and R. Mark. (1977), “Fear of Deterren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6: 293 – 316.
- Gober, T. (1981), “The Crime Displacement Hypothesis: An Empirical Examination”, *Crime Delinquency* 26.
- Gourley, G. Douglas and Allen P. Bristow. (1970), *Patrol Administration*, Sixth Printing,

-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Publisher.
- Hale, Charles D.(1994), *Police Patrol: Operations and Management*, Second Edition, New York: Prentice Hall Career & Technology.
- Kansas City, Missouri, Police Department. (1977), *Response Time Analysis: Executive Summary*. Kansas City, MO: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 Langworthy, Robert H. and Lawrence F. Travis III.(1994), *Police in America: A Balance of Forc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Loftin, C., and D. McDowell.(1982), "The Police, Crime and Economic Theory: An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393 – 401.
- Monk, Timothy.(October 1986),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apidly Rotating Shift Schedules: A Circadian Viewpoint", *Human Factors*.
-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9), *Polic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ampson, R. J., and J. Cohen.(1988), "Deterrent Effects of The Police on Crime: A Replication and theoretical Extension.", *Law & Society* 22: 164 – 189.
- Shanahan, Donald T. (1978), *Patrol Administration*, Boston: Holbrook Press.
- Siegel, Larry J.,(2003), *Criminology*, Belmont, CA: Thomson Learning.
- Spelman, William and Dale Brown. (1984), *Calling the Police: Citizen Reporting of Serious Crime*.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Stenzel, W. William and R. Michael Buren.(1983), *Police Work Scheduling: Management Issues and Practic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Stone, Alfred R., and Stuart M. DeLuca. (1985), *Police Administr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Thibault, Edward A., Lawrence M. Lynch and R. Bruce McBride(1995), *Proactive Police Management*, 3rd ed., N.J.: Prentice Hall.
- Tittle, Charles and Alan Rowe.(1974), "Certainty of Arrest and Crime Rates: A Further Test of the Deterrence Hypothesis", *Social Forces* 52.

- Wilson, J. Q., and B. Boland. (1978), "The Effect of the Police on Crime", *Law & Society* 12: 367 – 390.
- Wilson, O. W. and McLaren, Roy Clinton. (1977),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Walker, Samuel. (1983, 1992), *The Police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Abstract】

## Correlation of Police and Crime Prevention

Roh, Ho-R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orrelation of police and crime prevention. In the crime prevention of police, several theoretical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Deterrence theory emphasized the threat of punishment to inhibit wrongful behavior.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relies on the existence of three factors, there are the severity, certainty, and celerity of the punishment.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approach focuses upon reducing opportunities for crime, the techniques of situational prevention included target hardening, assess control, formal surveillance, identifying property, removing inducements, deflecting offenders, and etc.

Patrol is one of the main activities which deter crime. Quantity of patrol has been related to efficacy of crime prevention. The Kansas City Preventive Patrol Experiment(1972 – 1973) was the first scientific research to measure the deterrent effect of patrol. This experiment found that variations in the level of patrol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either criminal activity or citizen feelings of safety. Increased levels of patrol did not result in an increase in crime.

The basic finding in the study that was not reduced in increase of police except for the category of slight crime, traffic crime. Based on these result,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activities. The measures to improve is to strengthen the role of counseling, to patrol high-visibility and saturation, to raise arrest rate and to integrate problem-oriented policing and intelligence-oriented policing.

**Key Words :** Correlation of police and crime prevention, Patrol, Community policing,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reducing opportunities for crime.